



강북구의회 소식

바른의정,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www.gbc.seoul.kr

트위터 www.twitter.com/gangbukcouncil

페이스북 www.facebook.com/gangbukcouncil

제168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는 2013년 3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8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16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1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제168회 임시회 주요처리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

특별시 강북구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구임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공동전기료 및 수도료 등)국시비 지원 건의안 등을 심의하고 처리하였다.

■ 현장활동

행정보건의위원회



봉제지원센터 방문

복지건설위원회



수유역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강북구의회는 3월 15일 제 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여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10월 9일부터 6개월간 활동을 목표로 각 사안별 특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I.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 구성 : 총5명 (이영심 위원장, 구본승 부위원장, 김용욱 위원, 박문수 위원, 이성희 위원)
- 목적 : 강북구청에서 민원사항들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편익적 해석,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구민 불편,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조사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 편익에 기여하고자 구성
- 주요 활동 : 제설 대책 관련 업무보고, 겨울철 연탄재 쓰레기 배출관련 업무보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방문,

민생처리관련 특별위원회



장애인단체 간담회

여성·보육정보센터 방문,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송천동 송인로 7길 주변 교차로 개선 관련 간담회, 중증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개선 관련 간담회 등

II. 여성 특별위원회

- 구성 : 총5명 (이순영 위원장, 김도연 부위원장, 최 선 위원, 김동식 위원, 강남연 위원)
- 목적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민주적 사회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강북구 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의 향상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 주요 활동 : 무상보육정책 간담회, 관내 여성단체장 간담회, 관내 여성복지시설 센터장 간담회, 강북여성보육정보 센터 업무보고, 강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업무보고 등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단체장 간담회

회기일정 안내

■ 제169회 임시회 안내

- 기간 : 2013년 4월 12일 ~ 4월 23일(12일)
 -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행감시기 등 결정, 행감자료요구 및 감사계획서 승인 등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강북구의회사무국 901-4521~4

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서유지곤란 및 집단민원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